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1. 27 선고 2020가단827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1. 6

판결 선고 2021. 1. 27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. 1. 13. 접수 제315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43934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. 4. 21.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2,436,986원 및 그중 10,932,3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, 위 이행권고결정은 2020. 5. 8. 확정되었다.

나.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 부동산'이라 하고, 이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C는 2017. 1.13.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2017. 1. 6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4,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
다.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와 피고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

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판단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저나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(그는 2017. 1. 12. 피고로부터 주택자금 1억 5,000만 원, 생활자금 5,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, 피고는 2017. 1. 12.부터 2017. 1. 13.까지 C에게 합계 49,996,480원을 송금한 사실, C는 2014.12. 30.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,2부동산을 1억 2,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. 2. 4.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, 피고는 2014. 11. 15.부터 2015. 1. 15.까지 D에게 합계 8,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, C는 2016. 8. 31. 표충회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1억 492만 원에 매수하여 2016. 10. 14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, 피고는 2016. 7. 7.부터 2016. 8. 31.까지 E중회 (F), G에게 합계 4,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

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택자금및 생활자금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며,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송호섭

별지